



인천지방법원

제 4 - 3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25나52441 손해배상(저)
원고, 피항소인	A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원 담당변호사 양진석
피고, 항소인	B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용섭
제 1 심 판 결	인천지방법원 2024. 8. 29. 선고 2024가단219277 판결
변 론 종 결	2025. 10. 1.
판 결 선 고	2025. 11. 19.

주 문

1. 제1심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2. 4.부터 2025. 11. 19.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의 1/6은 피고가, 나머지는 원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2. 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이 사건 소장 부분과 제1심판결 정본 등이 피고에게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된 사실, 피고는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2025. 2. 19.경 원고로부터 변제독촉장 및 제1심 판결문을 우편으로 받아 보고 비로소 이를 알게 되어 2025. 2. 24.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가 이 사건 제1심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2주일 내에 제기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하다.

2. 기초사실

가. 원고는 CAD/CAM/CAE 통합 소프트웨어인 E 프로그램의 저작권자이고, 피고는



인천 남동구 F에서 금형 제조업체인 'G'이라는 상호로 개인사업체를 운영한 사업자이다.

나. 피고는 '2020. 12. 4.경 자신의 사업장에 설치된 PC에 원고에게 저작권이 있는 E 프로그램을 무단 복제하는 방법으로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2023. 11. 14.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2023고약 13593호),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E 프로그램의 불법 crack 파일을 무단 복제하여 2020. 12.경부터 2023. 2.경까지 약 200회에 걸쳐 불법으로 사용함으로써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crack 파일은 약 360,000,000원이 넘는 E 프로그램의 모든 모듈을 실행·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므로 그로 인한 원고의 손해는 360,000,000이고, 최소한 E 프로그램의 최고급 모듈인 K의 정품가격은 60,000,000원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이는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에 따라 E 프로그램의 라이선스 계약에 따라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해당한다. 원고는 일부 청구로서 피고에 대하여 그중 60,000,000원(E 프로그램의 최고급 모듈인 K의 정품가격으로서 최소한으로 산정한 손해배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

피고는 E 프로그램을 복제하거나 불법으로 사용한 적이 없고, 피고는 별도의 정품 E 프로그램을 구입하여 사용하고 있다. 설령 피고가 E 프로그램을 복제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그로 인한 손해액은 피고가 정한 정품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없다.

4.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피고가 E 프로그램을 무단 복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는 원고의 E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 침해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그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액의 산정

1)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에 의한 손해액 산정 여부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은 '저작권권자 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그 권리를 침해한 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권리의 행사로 일반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응하는 액을 저작권권자 등이 받은 손해의 액으로 하여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의 '저작권권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알 수 없으므로 이 사건의 손해배상액 산정에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을 적용하기는 어렵다[갑 제4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2022. 1.경을 기준으로 E 프로그램 중 가장 고급 모듈인 K의 정품가격은 6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나, 피고가 원고로부터 프로그램을 적법하게 구매한다면 E 프로그램 전체가 아닌, 피고의 업무에 필요한 개별 모듈만을 선택적으로 구매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가 설치·사용한 범위 내지 버전이 'K'에 준하는 것이라고 인정할 아무런 구체적 근거가 없으므로, 원고 주장대로 E 프로그램의 모든 모듈 가격인 360,000,000원 또는 K의 정품가격인 60,000,000원을 '피고가 원고로



부터 이용허락을 받았더라면 대가로서 지급하였을 객관적으로 상당한 금액'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2) 저작권법 제126조에 의한 손해액 산정

저작권법 제126조는 '법원은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저작권법 제125조의 규정에 따른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변론의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은 E 프로그램 무단 복제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저작권법 제125조의 규정에 따른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 해당하므로, 저작권법 제126조에 따라 피고의 침해행위의 태양 및 기간, 피고가 원고 주장과 같이 E 프로그램의 모듈 전체를 피고의 업무 수행을 위해 사용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 오히려 을 1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16,000,000원 상당의 정품 E 프로그램을 구입하여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의 침해행위로 인한 이 사건 저작물의 무단 전파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의 침해행위로 인한 원고의 손해액을 10,000,000원으로 인정하기로 한다.

다. 소결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E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재산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2020. 12. 4.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대하여 다툼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11. 1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 중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윤정인

 판사 유성혜

 판사 서희경